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실효성 강화 등〉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92호)

2025. 9.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1. 총 괄	5
(1) 제정안의 입법취지	5
(2) 제정안의 구성체계	9
(3) 해외의 기후위기 적응법 사례	11
(4)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3
2. 조문별 검토의견	18
(1)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	18
(2)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4조 및 제5조까지)	2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24

(4)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제7조)	26
(5)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제8조 및 제9조)	29
(6)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10조)	33
(7)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제11조부터 제 16조까지)	36
(8) 보칙(제17조부터 제21조)	42
(9) 부칙(시행일)	46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2일 임이자위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마련을 위한 조사·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여 적응역량과 기후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본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적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대상이 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들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마. 기후위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우리나라의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의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수집·관리 및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기후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 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을 향상시키며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지표, 기후위기 적응진척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정보활용 및 평가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 괄

(1) 제정안의 입법취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이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 생산, 관리, 보급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정보 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되고 효

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체계 및 제정법안 비교]

구분	감시·예측	기후영향 평가	취약성 평가	기후위험 평가	회복력 증진	정보활용
현행	탄녹법 제37조 1항	법적근거 ×			·포괄적 규정 (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
		모티브 (MOTIVE) ¹⁾	베스탑 (VESTAP) ²⁾	-		
제정안	탄녹법 인용	방법론 개발 등 구체화			·기후위험 평가 결과 기반 대응 사업 수립 ·취약계층 지원	통합플랫폼 기후위험지도 적응지표

주1) "모티브 (MOTIVE)"는 Model of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of climate change의 약자로, 건강, 물관리, 농업, 생태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모형임

주2) "베스탑 (VESTAP)"은 Vulnerability Evaluation System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의 약자로,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건강, 국토, 농축산 등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도구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예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동법 제39조2)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에 있어, 기후위험평가와 기후위기 영향 조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완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동법 제42조3)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이 동 제정안은 기후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관련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험 평가, 회복력 증진, 적응정보 공개 및 활용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주체	내용	법조항
감시·예측	기상청 등	· 적응정보 생산시 탄녹법 37조1항에 따른 기후 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	제7조(2항)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정부 (소관부처)	· 부문·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 산업단지 및 공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제8조
기후위험 평가	환경부	· 기후위험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5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적응대책에 반영 · 국토계획, 중·장기 행정계획 등에 반영 · 탄녹법 제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반영	제9조
회복력 증진	지자체 (환경부)	·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부 제출(지자체) · 탄녹법 제42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반영 · 기후보험 및 기후공시 지원	제14조 제15·16조
적응정보 공개·활용	환경부 (정보관리원)	· 적응정보 수집·관리, 국민공개, 기후위기적응 정보통합플랫폼 구축 ·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 설치·운영 · 기후위험지도 작성·보급 · 적응지표 개발·보급 및 적응진척도 점검(2년)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기타	환경부 (관계부처)	·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 재정지원 등	제17~20조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에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정보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 회복력 증진 시책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기후보험, 기후공시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 보칙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기후영향·취약성·위험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등,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안에서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세부 조문
총 칙	▪ 목적(§1) ▪ 정의(§2) ▪ 기본원칙(§3)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4) ▪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5) ▪ 다른 법률과의 관계(§6)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평가	▪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7) ▪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8) ▪ 기후위험 평가(§9) ▪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10)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 회복력 증진 시책	▪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11) ▪ 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12) ▪ 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13) ▪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14) ▪ 기후보험(§15) ▪ 기후공시 지원(§16)
보 칙	▪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17) ▪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18) ▪ 전문인력의 양성(§19) ▪ 재정지원 등(§20) ▪ 권한의 위임(§21)
부 칙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3) 해외의 기후위기 적응법 사례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도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기후위기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을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동 법률에는 기후변화적응계획, 기후변화 적응의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도 2024년 7월 1일부터 연방기후변화적응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이 생명과 건강, 사회문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에 의한 기후위험분석 및 적응전략 수립과 주정부에 의한 기후변화적응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본과 독일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일본	독일
법률명	· 기후변화 적응법 (‘18.12.1. 시행)	· 연방 기후변화적응법 (‘24.7.1. 시행)
제정 목적	- 완화과 적응은 목적 및 주요 정책이 상이 - 기후위기 피해가 점차 확대되므로 별도 법률 제정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사회문화, 경제의 별도 보호법익의 마련을 위해 제정
주요 내용	- 기후변화 관련 정보 수집·제공 등 - 기후영향평가보고서 작성(5년) 및 공표 - 적응성과 파악, 평가기법 개발	- 기후위험 분석·결과 발표(10년) - 기후변화결과 모니터링보고서(4년) - 측정가능한 목표를 포함한 적응전략 수립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법의 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노력) 제6조(국민의 노력) 제2장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7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책정) 제8조(기후변화적응 계획의 변경) 제9조(평가방법 등의 개발) 제10조(기후변화 영향의 평가) 제3장 기후변화적응의 추진 제11조(연구소의 기후변화적응 추진에 관한 업무) 제12조(지역 기후변화적응 계획) 제13조(지역 기후변화적응센터) 제14조(기후변화적응광역협의회) 제15조(관련 시책과의 연계) 제4장 보칙 제16조(관측 등의 추진) 제17조(사업자 및 국민의 이해 추진) 제18조(국제 협력 추진) 제19조(국가의 원조) 제20조(관련 행정기관 등의 협력) 부칙	제2조(정의) 제2장 연방에 의한 기후변화 적응 제3조(사전 예방적 기후변화적응전략) 제4조(기후위험분석: 정보수집) 제5조(감시 목표 미달성 시 재조정) 제6조(연방차원에서의 기후변화적응) 제7조(연방자산(국유지)의 기후변화에의 적응) 제3장 고려요건 제8조 고려요건 제4장 주의 기후변화적응 제9조 연방과 주의 협력 제10조 주의 기후변화적응 제11조 주의 보고 제12조 기후변화적응계획 제5장 종결규정 제13조 종결규정 제14조 효력의 개시 부칙
---	---

(4)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응대책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후위험의 관리와 사회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농업, 수산업,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후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정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더해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촉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기후 회복력

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후 적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중 정의, 기본원칙, 책무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장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

조항	주요내용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및 기상정보 감시,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매년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점검 및 공개, 개선사항의 정책에 반영 등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주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환경부장관에 보고 등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및 환경부장관 등에 제출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한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등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깨끗한 물공급, 수생태계 보전 등 물 관련 시책의 수립·마련 등

4)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 부분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본원칙과 책무의 내용은 기본법과 중복되지 않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은 기본법에서는 기본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며, 특별법에서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으나, 정의(“기후위기 적응정보”) 규정,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은 중복되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의 반영 등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 분야의 전환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적응센터 지정 등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법률 제20514호의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⁵⁾에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10조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제11조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동 제정안 심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있음.

첫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은 기후위기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0514호)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응정보 수집·관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등과 관련하여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관을 ‘환경부장관’에서 ‘정부’로 수정⁶⁾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10조제2항의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등의 설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기관의 직제 등 조직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⁷⁾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동법 제11조제1항⁸⁾

6) 이 경우 제정안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유사하게 ‘정부’로 주어를 수정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각 부처별 소관 사항을 다루게 되는 구조로 변경해야 할 것임.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동법 제12조제1항9)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동 계획들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 4. (생략)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 9. (생략)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별 검토의견

(1)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조는 기후위기와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이에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률명 및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¹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영향, 기후회복력 등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기후 회복력 강화에 기여”를 “기후 회복력 강화 및 국민의 안전 확보”로 수정

첫째, 안 제2조제9호의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의²¹¹⁾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조제8호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¹²⁾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포함된 사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새롭게 용어를 정의할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 대응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기후위기 취약성”이란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4. “기후위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5. “기후영향”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6.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7. “기후회복력”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생활·사회·경제·자연환경이 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말한다.
8.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9.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

제 정 안
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안 제3조는 기후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반 평가, 사전대비 및 지속적 평가, 취약계층 우선 대책 추진,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등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기후위기 적응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영향에 대한 최신의 과학적 조사·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여 취약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추진하고, 주기적·지속적으로 진척경과를 점검·평가하여 적응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3.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에 대하여 기후정의 실현 및 기후회복력 향상 관점에서 우선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4.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된 모든 정책·시책에 일관된 방식으로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역별·분야별 적응 정책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2)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제4조 및 제5조
까지)

안 제4조는 국가의 기후영향 분석, 기후예측 결과 반영,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자치단체의 적응시책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관리, 정보관리 및 제공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는 국민과 사업자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 등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 등에 적극적 참여 및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영향에 따른 장기 전망을 예측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영향 및 장기 예측 결과를 관계 법령, 국가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응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응시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성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기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보를

제 정 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는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 위기 적응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방위적인 만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사업자와 국민도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책무 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안 제6조는 기후영향, 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기후영향, 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적응정보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특별법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기후위기 적응 등을 다루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관련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¹³⁾.

13)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적응 부분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본원칙과 책무의 내용은 기본법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위기
적응시책 관련 사항]

조항	주요내용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및 기상정보 감시,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매년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점검 및 공개, 개선사항의 정책에 반영 등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5년주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추진상황의 점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등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 주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이행실적 작성 및 환경부장관 등에 제출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취약지역 및 계층을 위한 지역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등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깨끗한 물공급, 수생태계 보전 등 물 관련 시책의 수립·마련 등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국토종합계획 등 주요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의 반영 등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농림수산 분야의 전환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등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적응센터 지정 등

(4) 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제7조)

안 제7조는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활용에 관한 주체별 역할, 협의체 운영 등 적응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기후위기 적응정보 수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이하 “적응정보”라 한다)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한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지역에 대한 생태계·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등의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

제 정 안

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응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정보의 생산·수집 및 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연계·활용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적응정보 현황 및 통계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협의체 운영, 적응정보와 통계의 분석·검증 및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7조제6항과 관련하여 적응정보의 단순한 제공 목적 외에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¹⁴⁾하고, 안 제7조제8항에서 적응정보의 수집 이후 생산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¹⁵⁾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14)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적응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으로 수정

15) “적응정보의 생산·수집”을 “적응정보의 수집·생산”으로 수정

있음.

둘째, 안 제7조제1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 제2항16)에서 이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에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¹⁷⁾.

또한, 안 제10조에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안 제2조제9호에서 기 정의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구를 수정¹⁸⁾할 필요가 있음.

-
-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0514호)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을 두고 동 법에서 구체적인 구축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18) 안 제7조제1항의 “제2조제9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로 수정

(5)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제8조 및 제9조)

안 제8조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단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임.

다만, 안 제8조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소관 행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8조(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 및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2. 취약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 그 밖에 적응 정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등 취약실태 조사·분석 방법,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는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기후위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기후위험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종합평가서”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취약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
2.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 그 밖에 기후위험 평가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정 안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후위험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종합평가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위험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기후위기 적응대책 반영, 관련기관에 자료요청 및 협조 규정, 기후위험평가결과의 중·장기 행정계획 등 반영,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기후위험 평가결과 반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제1항19)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동법 제11조제1항20)에 따른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동법 제12조제1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 11. (생략)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²¹⁾에 따른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후위험 평가결과를 동 계획들의 수립에도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 9. (생략)

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제10조)

안 제10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적응정보의 표준 설정 및 관리,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6.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 관리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법률 제20514호의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²²⁾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 제10조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²³⁾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0조제2항의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²⁴⁾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0514호)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법률에서 동 사항을 삭제하거나 동 제정안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에 따라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과학원)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로 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나 하부조직 등의 설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각 기관의 직제 등 조직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후위기적응정보 활용 및 기후회복력 증진 시책(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안 제11조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 표준체계 설정,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관된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부처별 적응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제공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공동활용(적응주체별 맞춤형 정보 제공)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안 제11조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법률 제20514호의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²⁵⁾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²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0514호)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

므로 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²⁶⁾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2조는 기후위험지도 작성 및 정부 또는 지자체 장이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제 정 안
제12조(기후위험지도 및 저감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험지도의 작성 방법, 기준 및 내용,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인프라, 산업단지, 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안 제13조는 기후위기 적응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적응성과 및

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법률에서 동 사항을 삭제하거나 동 제정안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진척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기후적응에 대한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를 점검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적응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후영향과 취약성, 적응능력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 정 안
제13조(기후위기 적응지표 및 적응성과·진척도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성을 줄이고 적응역량 향상 및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지표(이하 “적응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지표에 따라 2년마다 기후위기 적응성과·진척도(이하 “적응성과·진척도”라 한다)를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응지표의 개발·보급 및 적응성과·진척도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 제14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이상기후·극한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안 제14조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기후위기예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²⁷⁾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급 노력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의 생활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²⁷⁾ “극한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피해, 기후위기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 “극한기후 등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및 피해,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

제 정 안

제15조(기후보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기후 관련 보험은 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농어업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 상품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련 위험을 보장하고 녹색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²⁸⁾.

안 제15조의 기후보험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기후보험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한 만큼, 기후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후보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⁹⁾.

안 제16조는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기후위험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후공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28) 이코리아, ‘기후변화 피해 확산, 보험상품 다양화 필요성 ↑’ 2023.9.27

29) 환경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과 그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개발의 지원 및 보급 노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임.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후공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8조제1항제2호³⁰⁾에서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복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적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공시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후위험의 과학적 산정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 제목을 “기후공시 지원”에서 “기후위험 평가도구 개발 지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제16조(기후공시 지원) 정부는 기후위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미치는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30)안 제18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8) 보칙(제17조부터 제21조)

안 제17조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18조는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지식보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등)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기후 회복력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취약실태, 기후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조사·분석 2.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개발 3. 적응정보의 수집·관리 등 관련 표준 개발 4. 그 밖에 기후영향·취약성·위험 평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8조 본문의 “기후 회복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목표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기후 회복력 강화”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9조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취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의 복잡성과 전문성, 기후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제 정 안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영향·기후위기 취약성 및 기후위험 평가 등 적응역량 및 기후 회복력 증진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임.

다만, 안 제19조제3항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입법례³¹⁾를 참고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의 지

정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0조는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안 제21조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권한 위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제20조(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후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정 안

위기 적응을 위한 학술조사·연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그 밖에 재정·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부칙(시행일)

부칙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수집 및 관리·활용,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0514호) 제37조³²⁾에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에 대해 기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을 통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3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0514호)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10.23.]

사항을 보다 구체화³³⁾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05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제정안과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³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

33) 제정안 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의 정의, 조사의 방법·기준 및 자료의 처리·활용 방법 등 적응정보의 표준설정 및 관리
2. 제7조에 따른 적응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
3. 제8조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및 관련 방법론 개발
4. 제9조에 따른 기후위험 평가 및 관련 방법론 개발
5.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6.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취약기관, 산업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응정보의 원활한 공개 및 공동활용을 위해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을 통해 적응정보의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정보 공개와 공동활용, 생산표준 설정·관리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선연적인 규정을 두며, 동 제정법에서 구체적인 구축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관련 사항은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